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당초 상병명 “흉 및 요부염좌”로 요양중 “1) 척추중협부 결손 제 5요추 양측, 2) 척추강협착증 제 4~5요추간 및 제 5요추 1척추간”의 상병이 추가 진단된 경우

(87-106 호 87.5.18. 기각)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태백시 화전 1동

성명: 최 ○ ○

소속: ○○광업소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태백사무소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6.12.1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

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채탄선산부로서 86.6.17. 15:00 보갱작업중 상부 갱도가 붕락되어 경석과 탄 등이 굴러내려오자 이를 피하려다 튀어나온 각주 등에 걸려 넘어지며 승아래로 굴러내려 허리부위에 부상을 입고 상병명 “흉 및 요부염좌”로 김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가료하던중 86.11.12. 춘천성심병원 특진결과 “1)

척추궁 협부결손 제 5요추 양측, 2) 척추강협착증 제 4-5요추간 및 제 5요추 1천추간”이 추가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가 요양신청 상병명 “1) 척추궁 협부결손 제 5요추 양측, 2) 척추강협착증 제 4-5요추간 및 제 5요추 1천추간”은 기존질병이라는 자문의 소견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하였던바 산재심사관은 X-선사진을 첨부 한강성심병원에 업무상 질환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던바 “척추협부 결손은 척추궁 협부가 이단이 생긴 질병으로서 제 4-5요추가 호발하기 때문에 요통의 원인이 되며, 본증은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이 있어 후천적인 것은 척추궁 협부에 배토근장, 요추만곡 등에 의한 역학적 부담이 잠행적으로 골절을 야기시켜 분리증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본 관절 배후는 퇴행성 변화 즉, 한계 노화현상으로 역시 요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척추궁 협부 결손, 척추강협착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음”이라는 소견이므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추가 진단상병명 “척추궁 협부결손 제 5요추 양측, 2) 척추강협착증 제 4-5요추간 및 제 5요추 1천추간”이 86.6.17.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상병이므로 요양승인하라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추가 요양신청 상병이 86.6.17.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7.4.14. 최○○)
2. 원처분청 의견서(87.4.20. 노동부 태백 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7.2.18. 송○○)
4. 최초 요양 신청서(86.8. 최○○)
5. 초진 소견서(86.8.2. 김정형외과의 원

장)

6. 요양결정 결의서(86.8.29. 노동부 태백 지방사무소장)
7. 요양결정 결의서(86.12.18. 노동부 태백 지방사무소장)
8. 추가상병 승인신청서(86.11.18. 김정형 외과의원장)
9. 산재특진 소견서(86.11.17.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장)
10. 진단서(87.2.17. 한양대학 부속병원장)
11. 진단서(87.4.7.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장)
12. 진단서(87.4.10. 한국병원장)
13. 진단서(87.1.9.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장)
14. 산재심사관 결정서(86.10.6. 오○○)
15.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86.6.17. 업무상 부상을 입고 “흉요추부 염좌”로 김정형외과의원에서 86.6.18.부터 86.9.23.(입원 56일 통원 42일)까지 요양후 86.9.24~86.11.30.(통원 26일 입원 42일)까지 치료연기 신청을 하자 원처분청은 “흉 및 요부염좌”에 대한 입원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자문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86.9.24부터 86.11.30까지 68일간 전기간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하였으며 86.11.12. 자 상병명의 확진을 위하여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의 특진결과 “1) 척추궁 협부 결손 제 5요추 양측, 2) 척추강협착증 제 4-5요추간 및 제 5요추 1추간”의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86.10.20부터 86.12.28까지 입원요양신청 및 동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자문의 소견이 추가 요양신청상병명 “척추궁 협부 결손 및 척추강협착증”은 기존질병이라고 하여 추가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함과 동시에 86.10.20부터 86.12.28까지 입원 요양신청한 기간은 통원요양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는 통원 요양으로 변경승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1.12.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에서 추가 진단된 상병명 “1) 척추궁 협부결손 제 5 요추 양측, 2) 척추강 협착증 제 4-5 요추간 및 제 5 요추 1 천추간”에 대하여도 요양승인하라는 주장인바 이에 관하여 86.11.17 자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특진소견서를 보면 “진단상병은 1) 요부염좌, 2) 척추궁협부 결손, 제 5 요추 양측, 3) 척추강 협착증 제 4-5 요추간 및 제 5 요추 1 천추간(제 4-5 요추간은 양측 면관절(Facet joint)비후 제 5 요추 1 천추간은 우측면관절 비후에 의함)이며 상황 소견은 단순 X-선상 양측 제 5 요추궁 협부에 퇴행성으로 추정되는 결손 소견이 있으며 척추강조영술상 및 척추전산화 단층촬영상 상기진단명 척추강 협착증 제 4-5 요추간 및 제 5 요추 1 천추간이 추정되며 요통 등에 대한 보존적 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요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나타나 있어 양측 제 5 요추궁 협부에 퇴행성으로 추정되는 결손이 있는바 이는 기존증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시 제출한 87.4.10 자 한국병원 진단서 및 87.4.7. 자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 진단서상

에도 위 추가상병명은 나타나 86.6.17. 당초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바 산재심사관이 한강성심병원에 업무상 질환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한 결과도 “척추 협부결손은 척추궁 협부가 이단되며 본증은 전인구의 5% 전후하여 볼 수 있으며 본증은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이 있어 후천적인 것은 척추궁 협부에 배근긴장, 요추만곡 등에 의한 역학적 부담이 잠행적으로 굴절을 야기시켜 분리증을 발생시키는 것이 의학적인 견지이며 또한 척추강 협착증은 양측면 관절의 비후이고 본 관절비후는 퇴행성 변화 즉 한계 노화현상으로 역시 요통이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척추궁 협부결손 척추강 협착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음”이라는 소견으로써 원처분청 자문의와 같이 청구인의 추가 요양신청한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동 추가 요양신청한 상병명에 대하여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프라스틱 근로자가 작업중 부상을 입고 “1) 상악 절취탈구, 2) 내과질환, 3) 신경질환”의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상악절취탈구에만 요양승인된 경우

(87-225 호 87.8.24.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서울 강동구 가락동

성명: 최 ○ ○

소속: ○○프라스틱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성남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5.25.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요양불승인 적용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프라스틱 소속 분쇄공으로 근무 중 86.9.15. 분쇄실에서 자동분쇄기로 피.엑소.막기돌이 스크랩을 분쇄하는 작업중 막기돌이가 튀는 순간 상병명 “1) 상악 1절치 탈구, 2) 내과질환(복통, 소화불량, 배변이상 등), 3) 신경질환에 대하여 요양승인 요구 진정하자 원처분청에서는 사실 조사하고 상병명 “상악 1절치 탈구”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하고 내과 질환 및 신경질환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상병명 “내과질환 및 신경질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명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7.8.1. 최○○)
2. 원처분청 의견서(87.8.7. 노동부 성남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7.6.23. 박○○)
4. 재해조사 복명서(87.5.25. 노동부 성남사무소장)
5. 주치의 소견서(87.5.15. 정○○ 원장)

6. 자문의 소견서(87.5.22. 정○○)

7.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병명 “상악 1절치 파절은 업무상 요양승인 처분하였으나 내과 질환 및 정신·신경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의 재해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자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질환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동진프라스틱에서 근무 중 86.9.15. 분쇄실에서 자동분쇄기로 피.엑소.막기돌이 스크랩을 분쇄하는 작업중 막기돌이가 튀는 순간 입부분을 맞아 상악 1절치가 파절되는 재해를 입고 사비로 요양가료한 바 있었고

둘째: 청구인은 87.4.28. 상병명 “상악 1절치 탈구”와 복통, 소화불량, 배변이상 등의 내과질환과 두통 등 신경정신질환, 동 상병에 대한 요양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당초 상병(상악 1절치 탈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추가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요양한 바 있는 정○○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상병명 “상악중절치 탈구”와 내과 질환 및 신경정신과 질환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며

네째: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역시 상병명 “상악 1절치 파절”의 외상만으로 내과 및 신경정신과 질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피해 사실로 보아 상병명 “내과질환 및 정신신경 질환에 대해서는 동 업무상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일뿐 그외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상병명 “내과 질환(복통, 소화불량, 배변이상, 복부팽만감) 및 신경정신 질환에 대하여 업무의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